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가단531210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전 문

원 고 A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8.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79,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6.부터 2022. 8. 3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 차량에 승차하였던 사람이다.

나. D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은 2021. 7. 25. 13:5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이 승하차를 하던 중 피고가 원고 차량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좌석에 앉았다.

다. 피고는 종점에 이르러 원고 차량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원고 차량의 앞문을 빨리 닫아 앞문이 오른 쪽 발에 접촉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2021. 7. 26. G병원에서 건관절 염좌, 요배부 염좌, 족관절 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 G병원과 H한의원에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21. 8. 24.부터 2021. 11. 15.까지 위 병원들에게 피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579,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 차량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앞문이 오른 쪽 발에 접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접촉이어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579,870원은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79,8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 차량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의 앞문을 빨리 닫아 앞문이 오른 쪽 발에 접촉하여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룬다.

3. 판단

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고 차량 앞문이 피고의 오른 쪽 발에 접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접촉이어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접촉으로 상해를 입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2021. 7. 26. G병원에서 견관절 염좌, 요배부 염좌, 족관절 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부터 G병원과 H한의원에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 차량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앞문이 오른 쪽 발에 접촉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가 원고 차량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좌석에 앉았다가 종점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접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고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차량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앞문이 오른 쪽 발에 접촉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1,579,870원 지출하였고, 그것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위

1,579,8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것에 따라 원고의 최종 치료비 지급일 다음 날인 2021. 11.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종택

별지